EAID-CG

수 신: 미2사단/연합사단 소속 전 구성원

제 목: 지휘 지침서 #11: 장애인(IWD) 대상 합리적 편의 (RA)

1. 참조:

a. 육군 규정 690-12 (균등고용기회 및 다양성), 2019년 12월 12일.

b. 501조항, 재활법, 1976년 9월 26일, 개정안

c. 미국 장애인법, 1990년 7월 26일.

d. 2008년 미국 장애인 법 및 기타 장애 비차별법, 2008년 9월 25일

e. 미8군 지휘 지침서 #9, 장애인 (IWD) 대상 합리적 편의 (RA), 2023년4월 19일.

2. 목적. 장애인 대상 합리적 편의 관련 정책과 절차 설립.

3. 배경. 본문에서 장애를 가진 개인이라함은 육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한 개 혹은 그 이상의 주요생활활동들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개개인을 의미함. 대다수의 장애인은 합리적 편의 없이도 일할 수 있지만, 편의 절차가 필수적인 장애인 지원자나 직원 또한 존재함. 장애인 직원 중 합리적 편의가 필요한 대상은 만약 사업장 내 특정한 직책을 위한 효과적 경쟁, 업무 수행, 그리고 고용 복지 및 고용기회 등을 누리는데 가진 장애로 인하여 제한된다는 것을 판단하면 반드시 관리장에게 이 사실을 알릴 것임. 장애인 직원은 업무 수행 혹은 행동 프로그램 수행에 지장이 되기 이전에 편의를 요청할 책임이 있음.

4. 논의.

a. 직책의 필수적 기능을 수행하거나 해당 직책에 지원 시 또는 동일한 고용 기회와 복지를 누리기에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편의는 이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장애인에게 합리적 편의가 제공될 것임. 자격을 갖춘 개인이 단지 장애로 인하여 승진에 대한 불이익을 받거나 기회를 거부당하는 일은 없어야 함. 합리적 편의 요청은 적절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인 절차로 진행되고 제공될 것 임.

b. 합리적 편의는 자격을 갖춘 장애인 직원이 업무 수행 그리고 고용 절차, 혹은 업무 환경 등이 제공된 균등한 고용 기회(EEO0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조정 혹은 수정 절차를 의미함.

5. 직원과 관리자는 미8군에서 제공하는 합리적 편의 요청 절차에 대해 숙지 및 인지하고 있어야 함.

6. 미2보병사단 소속 관리자와 책임관리관은 고용 관련 합리적 편의 요청이 직원 혹은 지원자로부터 접수되면 신속히 진행해야 함. 해당 승인 기관은 경감 사유를 제외하고, 합리적 편의 요청 접수 시 30 업무일 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함.

7. 장애로 인한 차별 혐의 관련 민원 담당은 각각 기관 제공 균등고용사무실 (EEO)이며 이는 사전 설립 절차에 의거하여 수집 및 진행될 것임.

8. 본 지침서는 미8군 균등 고용 기회 (EEO) 부서에서 발의됨. 담당관 연락처는DSN (315) 755-0320/21임.

CHARLES T. LOMBARDO

Major General, USA

Commanding